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1.

창녕군수

1. 사 업 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4차)
2. 총사업비: 금40,000천원(국비 16,000, 지방비 8,000, 자부담 16,000)
※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적용)
3. 신청기간: 2025. 10. 13. ~ 예산 소진 시까지 ※토·일요일 제외
4.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자부담 40%)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창녕군청 환경위생과(3층) 대기보전팀
 - (우편) 우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I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2항목 이상 적합 시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필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신규시설 (2022.5.3. 이후 가동개시 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및 금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

- [지원 사업장당 1개의 배출.방지시설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단가 【붙임 1】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② 기존시설 (2022.5.3. 이전 가동개시 시설)
 - 기존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장 우선 지원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이행(14일 이내)한 후 접수인정

4.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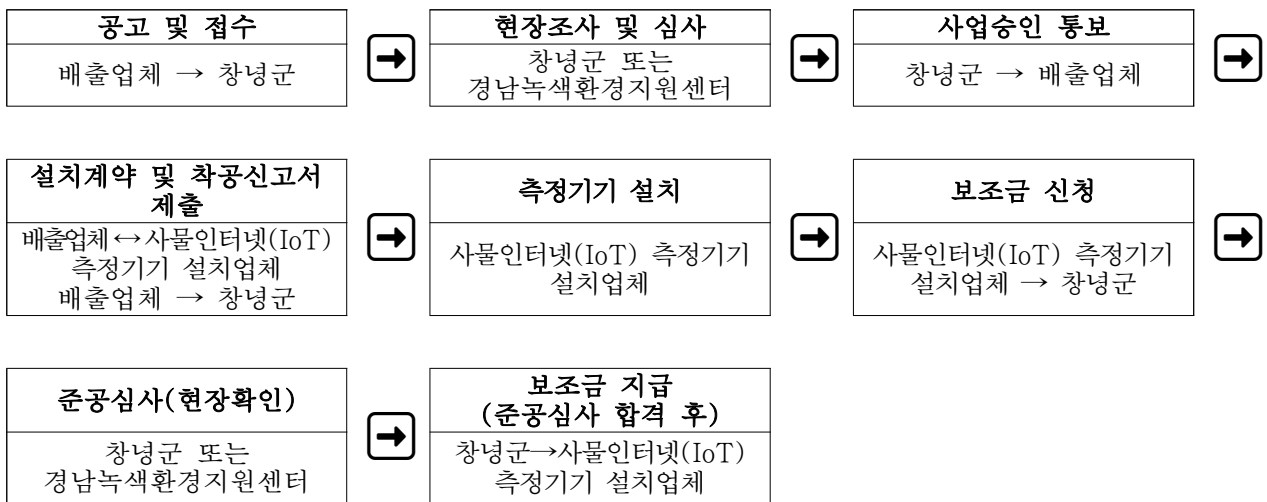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붙임 2】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붙임 3】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위치 【붙임 4】
- 배출시설 설치 불가능시 사유 【붙임 5】 (해당 시)
- IOT 세부 사양(환경공단 인증서 첨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붙임 6】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붙임 7】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8】
- 보조금 반납 협약서 【붙임 9】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 및 pdf파일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5. 사업진행 절차



- ①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를 창녕군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②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창녕군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③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5일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5일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④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창녕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⑤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3.6.) 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⑥ (준공심사 및 보조금 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창녕군에 제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 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⑦ (보조금 지급) 창녕군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15일 내)**
-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II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지설 미 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지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지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계측 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회수의 예외) 방지지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지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사후관리) 방지지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 결과,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III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기초하여,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지침 개정본에 따라 사업 진행 예정**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등 변경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진행
- 문의: 창녕군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055-530-7483)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액 및 규격(사양)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25년 추경예산)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C	0 ~ 14pH
오차²⁾	±5% 이내			
동작온도³⁾	-20 ~ 60°C	-20 ~ 60°C	-20 ~ 60°C	0 ~ 80°C
온도보상	-	-	-	0 ~ 50°C ⁴⁾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⁵⁾) 4 ~ 20mA (표시장치 ⁶⁾)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분리시설	100	1	먼지	0.36	2023-12-28
	분리시설	108.02	1	먼지	4.93	2023-12-28
	분리시설	154.84	1			
	도장시설	106.48	1			
	건조시설	109.14	1			
	도장시설	106.48	1			
건조시설	109.14	1				
시설 치 대 상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별첨 사용 금지)					
	관련 시설	종 류	규 격	수 량	비고 (IoT 제조사)	
	도장시설 (51.48)	전류계	0 ~ 600A	1		
		차압계	0 ~ 500 mmH ₂ O	1		
		온도계	- 40 °C ~ 100 °C	1		
		<u>IoT 게이트웨이</u>	<u>v2.64</u>	1	00업체	
		VPN	ITSCC CC인증	1		
		전류계	0 ~ 600A	1		
		차압계	0 ~ 500 mmH ₂ O	1		
		온도계	- 40 °C ~ 100 °C	1		
		<u>IoT 게이트웨이</u>	<u>v2.64</u>	1		
	여과집진시설	VPN	ITSCC CC인증	1		
	"	전류계	0 ~ 600A	1		
	"	차압계	0 ~ 500 mmH ₂ O	1		
	"	온도계	- 40 °C ~ 100 °C	1		
		<u>IoT 게이트웨이</u>	<u>v2.64</u>	1		
		전류계	0 ~ 600A	2		
		차압계	0 ~ 500 mmH ₂ O	1		
		온도계	- 40 °C ~ 100 °C	1		
		<u>IoT 게이트웨이</u>	<u>v2.64</u>	1		
		VPN	ITSCC CC인증	1		
		전류계	0 ~ 600A	2		
		차압계	0 ~ 500 mmH ₂ O	1		
		온도계	- 40 °C ~ 100 °C	1		

【붙임 3】

1-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치대상	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30m ³)*2, 탈사(15m ³)*2, 흡수에의한시설(300 m ³)*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창녕군수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환경부 2023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6~18 참조

【붙임 4】

1-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위치

측정기기 설치 사진	
IOT 기기 부착 지점(차압계, 온도)	설명
	<p>온도계</p> <p>차압계</p>
IOT 기기 부착 지점(전류계)	설명
	<p>1. 배출시설 전류계 분리시설(100m³)</p> <p>1. 방지시설 전류계(여과집진400m³/분)</p>
IOT 기기 부착 지점(게이트웨이)	설명
	<p>게이트웨이(부착예정)</p>

【붙임 5】

1-3. 배출시설 설치 불가능시 사유

시설명	분리시설 (100m³)
	<p>1. 설치 불가능 사유</p> <p>(예)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에어그라인더) 비고정 전기장치(콘센트)를 사용 중 등</p> <p><근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시행령[별표 3의2])</p>

1-4. IOT 세부 사양

- 환경공단 인증서 첨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붙임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9】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소재지		전화 팩스	
부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	---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팩스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규격	수 량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신청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p>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설치업체명 (인감도장)</p> <p>OO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10. 청렴이행서약서 						

등 록 번 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 보 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부착면제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p>「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보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p>※ 구비서류 :</p> <p>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p> <p>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p> <p>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p>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수수료	없 음
수수료									
없 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청렴이행서약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창녕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창녕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창녕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별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지원사업 대상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 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m ³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의한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5.04.01.		2025.04.02.		2025.04.03.		2025.04.04.		2025.04.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적합/부적합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5.04.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G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G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적합/부적합	
방지1	차압계	1							적합/부적합	
방지2	pH계	1							적합/부적합	
송풍2	전류계	1							적합/부적합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적합/부적합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